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4
----------	-----

제출년월일 : 1999. 11.

제 출 자 : 파주시장

☐ 개정이유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안으로 개정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은 파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국가,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2.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제3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한 대상자중에서 조례 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5조(지급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정학,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제6조(기금의설치) ①시장은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제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7조(장학금의 제원) 장학금의 제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기금의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파주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후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임명)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산업국장
2. 기금출납원 : 사회담당

②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영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는 일반회계원칙에 준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조성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